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579호 2017. 2. 15.(수)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7-13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3
 거창군 고시 제2017-14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5
 거창군 고시 제2017-15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6
 거창군 고시 제2017-16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 고시 7
 거창군 고시 제2017-17호 위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일반지구) 기본계획 수립 고시 8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7-200호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0
 거창군 공고 제2017-205호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7

거창군 공고 제2017-207호 가지리 보도정비공사(대우아파트~개화마을) 보상계
 획공고 25
 거창군 공고 제2017-218호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1
 거창군 공고 제2017-219호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입법예고 36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7-2호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1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7-3호 제2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46

회 람										
--------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2. 15.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구례길 189-76 외 6건(부여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학리 61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구례길 189-76	2009-04-01	2017-02-15	행정구역명 구례를 이용하여 구례길로 명명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84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성산길 132-26	2009-04-01	2017-02-15	성산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3-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밤티재로 1284	2009-12-28	2017-02-15	밤티재라는 지명이 반영된 도 로	
4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93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산수병곡길 188-46	2009-12-28	2017-02-15	북상면 산수리와 병곡리를 연 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5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198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중앙길 22-7	2009-04-01	2017-02-15	달이 마을 앞 성삼봉에 비친 다하여 월성이라 붙여진 옛 지명이 반영된 도로	
6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143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3길 170	2009-04-01	2017-02-15	행정구역명 석강을 이용하여 붙여진 세번째 도로	
7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장기리 580-14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북로 31	2009-12-28	2017-02-15	가북으로 가는길로 불려진 것 에서 유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목적: 농지조성(채소재배)
2. 사업내역

위 치	사업시행면적(㎡)		사업비	사업 예정기간	사업시행자	
	지 적	개간승인 면적			주 소	성 명
가조면 일부리 산15(임)	6,445 ㎡	4,740㎡	▶ 당초: 70,070천원 ▶ 변경: 69,740천원	2016.10.17. ~ 2017.10.16.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115, 105동 1001호	김진영

3. 사업효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4. 열람장소: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055-940-3542】

2017년 2월 13일

거 창 군 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목적: 농지조성(채소재배)
2. 사업내역

위 치	사업시행면적(m ²)		사업비	사업 예정기간	사업시행자	
	지 적	개간승인면적			주 소	성 명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산97	32,321 m ²	▶당초: 2,400m ²	▶당초: 16,940천원	▶당초 : 2015.11.26. ~ 2017.02.28.	경남 거창군 대평9길 11, 101호(대평빌라트)	구성철
		▶변경: 2,789m ²	▶변경: 22,000천원	▶변경 : 2015.11.26. ~ 2017.06.30.		

3. 사업효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4. 열람장소: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055-940-3542】

2017년 2월 13일

거창군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목적: 농지조성(과수원 - 사과재배)
2. 사업내역

위 치	사업시행면적(m ²)		사업비	사업 예정기간	사업시행자	
	지 적	개간 승인면적			주 소	성 명
신원면 중유리 산141-1	13,445m ²	4,938m ²	12,100천원	2017.02.14. ~ 2018.02.13.	경남 거창군 웅양면 원촌5길 45	김수호

3. 사업효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4. 열람장소: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055-940-3542】

2017년 2월 14일

거 창 군 수

위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일반지구)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안)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15년 착수한 위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일반지구)사업 기본계획에 대하여 승인하고,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5 일

거창군수

1. 사 업 명 : 위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사업
2. 사 업 목 적 : 위천면소재지의 거점기능 강화 및 기초서비스 기능 향상도모,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과 농어촌 지역의 중심거점공간 육성, 경상남도 대표적 브랜드 지역으로서의 역할수행
3. 사 업 구 역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일원
4. 사 업 규 모 : 법정리 3개, 행정리 7개
5. 면 적 : 55.57 km²
6. 세 대 수 : 총 1,115가구(농가 780가구)
7. 사 업 비 : 5,940백만원(국 4,158, 도 535, 군 1,247)
8. 사 업 량
 - 가. 기초생활기반확충 : 복지회관 리모델링, 마을공동 주차공간, 위천 어울림쉼터, 도시계획도로 신설
 - 나. 지역경관개선 : 위천 마을 둘레길, 쌍둥이 썸지쉼터, 사마솔숲 정비, 교량 야간경관 증진, 위천 상징 조형물
 - 다. 지역역량강화 : 교육 및 견학, 컨설팅, 홍보 마케팅, 마을경영지원

9. 사업 효과 : 위천면소재지 중심성 강화, 배후지역 자원과의 연계성 강화
10. 사업 기간 : 2015년 ~ 2018년(4년간)
11. 시행 자 : 거창군수
12.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업지역 주민의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한 주체의식.
13. 세부사업계획이나 상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촌개발담당 (☎940-8257)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의회 회의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02. 10.

거창군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거창군의회 의 자치입법기능 활성화 및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의장, 부의장의 임기 및 군정질문에 대한 절차 규정 등을 명시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장과 부의장 임기 구체화(안 제9조제2항, 제3항)
 - 현행 :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2년
 - 변경 :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
- 기금운영계획안 등 심사에 대한 절차규정 신설(안 제65조의2)
 -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절차를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심사 절차와 통일

- 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절차규정 신설.(안 제66조의2)
 - 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절차를 회의규칙으로 명문화
 - 본 질문과 보충질문 방법 및 질문시간 구체화하여 혼란방지

현행(관례상)	변경(회의규칙 명시)	비 고
본 질문 20분	본 질문 20분	일괄질문
보충질문 10분 (답변시간 제외)	보충질문 20분 (답변시간 포함)	일문일답
추가 보충시간 없음	추가 보충시간 10분 (의장이 허가하는 경우)	

4. 입법예고기간 : 2017. 2. 10. ~ 2017. 2. 16. (6일간)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50132)에게 서면이나 메일(hag112@korea.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의회 의회사무과 **【☎055)940-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③ 폐회 중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 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41조제1항 중 “표기”을 “표결”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 심사에 관해서는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6조의2(군정에 대한 질문)**
-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다.
 - ②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와 답변할 사람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의 군정질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본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의원별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보충질문은 제4항의 본 질문의 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본 질문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균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p> <p>① (생략)</p> <p>② <u>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41조(표결방법) ① <u>표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u></p> <p>② ~ ④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66조(군수의 출석요구)</p> <p>① ~ ③ (생략)</p> <p>④ <u>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u></p> <p>③ <u>폐회 중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u></p> <p>제41조(표결방법) ① <u>표결</u>-----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65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u>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 심사에 관해서는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를 준용한다.</u></p> <p>제66조(군수의 출석요구)</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삭 제></p>

<신 설>

제66조의2(군정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와 답변할 사람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군정질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의원별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보충질문은 제4항의 본 질문의 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본 질문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보충 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군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48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 ①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02. 13.

거창군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최근 핵가족화와 배우자 사별, 고령화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노인 고독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노후관리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업 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4. 입법예고기간 : 2017. 2. 13. ~ 2017. 2. 18. (5일간)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50132)에게 서면이나 메일(hag112@korea.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의회 의회사무과 **【☎055)940-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1부.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과 별거하며 사실상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홀로 사는 노인 혼자 임종을 맞음으로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게 대한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관리체계 구축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
3.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주민 홍보
5.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
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소재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고독사 위험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군수는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4.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예산 지원
- 관련 조문 : 제7조(지원사업 등)

2. 비용추계의 결과

-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1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총 비용(a - b)		134	134	134	134	134	134
세출	균비(a)	134	134	134	134	134	134
세입	균비(b)	0	0	0	0	0	0

3. 관련 의견

-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노인 고독사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노후관리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지원대상자 조사 : 15,600명 30,000천원
- 심리상담 및 치료 : 30,000천원
-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 1,496명 51,012천원
-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 105대 14,696천원
- 무연고자 장례비 지원 : 2명 8,000천원

작성자 :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 2016.12.30.] [법률 제13646호, 2015.12.29., 일부개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6.(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보 상 계 획 공 고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일원에 계획된 「가지리 보도정비공사(대우아파트~지내마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고 보상협의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2. 16.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가지리 인도정비공사(대우아파트~지내마을)
-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457-2번지 일원
- 다. 사 업 량 : 인도개설 L=1km, B=3.0m
- 라.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457-2번지 외 81필지
-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와 지장 물건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3.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93)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열람 및 감정평가 후 년차별 개별통지 예정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 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함.

나.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로 통지 예정임.

6. 감정평가업자 선정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이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 할 수 있음.

나.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음.

나.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함.

다. 본 신문 공고와 별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 수령자에게는 본 신문 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보상조서(토지명세)

토지의 명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현실 이용 상황	전체면 적 (㎡)	편입 면적 (㎡)	용도지 역 및 지구	관 계 인			비고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81필지			77,464	4,190					
거창읍 가지리	406-2	도	도	172	1	생산농 지	거창군			
"	1717-13	구	구	144	10	"	국(농림수산부)			
"	1713-7	도	도	35	13	"	국(국토교통부)			
"	456-11	도	도	34	12	"	거 창 군			
"	456-9	답	답	1857	4	"	이 경 원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539		
"	456-10	답	답	1676	20	"	형 남 정	부산북구대천동50-9 한성맨션 1-316		
"	457-1	답	답	925	11	"	류 지 성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543		
"	444-2	도	도	83	32	"	국(국토교통부)			
"	444-1	전	전	225	3	"	이 헌 태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509		
"	445-1	전	전	390	5	"	이 헌 태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509		
"	447-3	도	도	390	85	"	거 창 군			
"	447-1	전	전	1	1	"	형 계 준			
"	448-1	대	대	76	2	"	마 인 성	합천군 봉산면 노곡리 364		
"	448-2	도	도	3	3	"	류 을 룡			
"	447-2	전	전	3	1	"	형 계 준			
"	449-9	도	도	152	11	"	김 달 근	거창군 거창읍 학리 823		
"	449-6	도	도	107	12	"	거 창 군			
"	449-3	대	대	706	193	"	이선명 외 1인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498		
"	439-5	전	전	350	72	"	유 쾌 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236		
"	439-1	전	전	601	121	"	유 쾌 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236		
"	439-6	도	도	8	6	"	거 창 군			
"	439-2	도	도	400	95	"	국(국토교통부)			
"	590-2	도	도	145	31	"	국(국토교통부)			
"	590-1	답	답	223	55	"	신 인 숙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28-98		
"	590-6	도	도	8	8	"	거 창 군			
"	590-5	도	도	3	1	"	거 창 군			
"	454-3	답	답	1399	72	"	강 창 희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3가 489-3		
"	454-4	도	도	37	4	"	거 창 군			
"	454-7	도	도	50	41	"	거 창 군			
"	454-10	답	답	51	4	주거지 역	거 창 군			
"	1712-10	구	구	32398	15	"	국(농림수산부)			
"	644-6	대	대	5	5	"	거 창 군			
"	644-4	도	도	26	14	"	거 창 군			
"	644-1	대	대	488	36	"	박 창 덕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644		
"	1714-7	도	도	58	8	"	국(국토교통 부)			
"	644-3	답	답	35	13	"	박 창 덕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644		
"	1714-8	전	전	65	32	"	박 창 덕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644		
"	635-1	대	대	2	2	"	박 창 덕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644		
"	634-1	대	대	123	74	"	박 창 덕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644		
"	1714-6	도	도	209	22	"	국(국토교통부)			

"	1714-3	도	도	293	27	"	국(국토교통부)		
"	647	답	답	895	65	생산녹지	신 옥 순	밀양시 무안면 화봉리 93	
"	647-1	도	도	230	141	주거지역	거 창 군		
"	649-2	답	답	637	15	생산녹지	전 권 상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1길 94-54	
"	1714-2	도	도	1305	15	주거지역	국(국토교통부)		
"	650-1	답	답	85	25	생산녹지	양 말 용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617-1	
"	650-2	도	도	150	50	주거지역	거 창 군		
"	651	답	답	169	29	"	강 신 기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28	
"	1714-5	도	도	11	10	"	국(국토교통부)		
"	652	대	대	205	33	"	허 태 종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655-3	
"	652-1	도	도	929	216	"	거 창 군		
"	655-5	대	대	13	13	"	강신영 외 1인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635	
"	664-3	대	대	301	3	"	김 매 자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166	
"	655-1	대	대	1	1	"	강창식 외 1인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635	
"	655-6	도	도	24	6	"	강창식 외 1인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635	
"	664-1	대	대	363	38	"	강 신 영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289	
"	663-1	대	대	364	43	"	김 형 숙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296-4	
"	659-1	전	전	313	36	"	김 형 숙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296-4	
"	1714-1	도	도	22	2	"	국(국토교통부)		
"	660-5	도	도	222	9	"	신 순 성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166	
"	660-2	도	도	322	48	"	거 창 군		
"	660-1	전	전	384	46	"	이 도 균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614	
"	1442-1	답	답	158	15	"	이 복 덕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659-2	
"	1442-5	답	답	1257	26	"	전 진 식	부산해운대구중동1360 롯데낙천대 104동2603호	
"	1442-6	답	답	1388	65	"	이 명 수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566	
"	1442-7	답	답	2168	160	"	이 정 수	인천서구검암동511 풍림아이원202-1506	
"	1442-9	도	도	691	528	"	거 창 군		
"	1442-8	답	답	756	138	"	신 용 목	부산 동구 좌천동 879-3	
"	1460-1	구	구	125	6	"	국(농림수산부)		
"	1460-3	구	구	13	6	"	국(농림수산부)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100	
"	1117	대	대	627	2	자연녹지	오 동 균	부산 동구 좌천동 879-3	
"	1115-1	답	답	692	27	"	신 용 목		
"	941-2	도	도	5568	541	"	거 창 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311,901동 1206호(개포동, 우성9차아파트)	
"	1114-1	답	답	26	3	"	이 용 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개화길 271-22	
"	941-1	과	과	395	133	"	추 연 백	거창군 거창읍 개화길 271-22	
"	933	과	과	11062	174	"	추 연 백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954-5	
"	954-5	대	대	495	44	"	한 임 선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954-3	
"	954-6	도	도	38	32	"	박 부 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954-2	
"	954-1	전	전	527	50	"	유 병 규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048-2	
"	955-1	전	전	256	183	"	밀양변씨 벽봉공파종중		
"	1711-7	도	도	256	32	"	국(국토교통부)		
"	1711-6	도	도	65	4	"	국(국토교통부)		

○ 보상조서(물건명세)

물건의 명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거창읍 가지리	445-1	가옥	조립식판넬	34㎡	이헌태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509		
"		반송		10주				
"	448-1	가옥	판넬,블록	39㎡	마인성	합천군 봉산면 노곡리 364		
"		담장	블록	1.6㎡				
"		마당	콘크리트	1.8㎡				
"		대문		1식				
"		감나무		2주				
"	449-3	마당	콘크리트	11.7㎡	이선명 외 1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498		
"		저울		1식				
"	439-1	가옥	조립식판넬	57.6㎡	유쾌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236		
"		대문	슬라브,블록	9㎡				
"		가옥	슬라브,블록	30.6㎡				
"		가옥	슬라브,블록	124.9㎡				
"		가옥	슬라브,블록	14.8㎡				
"		가옥	슬라브,블록	15.4㎡				
"		계단	슬라브,블록	6.71㎡				
"		가옥	판넬,블록	26.8㎡				
"		마당	보도블록	0.7㎡				
"		담장	블록	1.4㎡				
"		대문	철재	1식				
"		향나무		6주				
"		대추나무		1주				
"	590-1	컨테이너		1식				
"	644-1	가옥	슬라브,블록	93.7㎡	박창덕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644		
"		가옥	조립식판넬	12.5㎡				
"		가추	양철	10.7㎡				
"		가옥	슬라브,블록	57㎡				
"		가옥	조립식판넬	31.8㎡				
"		모과나무		1주				
"		금송		1주				
"		소나무		3주				
"		기타수목		1주				
"	652	가옥	슬라브,벽돌	117.5㎡	허태종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655-3		
"		감나무		2주				
"		장미		1주				
"		대추나무		1주				
"		컨테이너	3*6	1식				
"	664-3	대문	철재	1식	김매자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166		
"	664-1	가옥	슬라브,블록	191.6㎡	강신영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289		
"		가옥	슬라브,블록	191.6㎡				
"		마당	콘크리트	2.4㎡				

"		감나무		1주				
"		복숭아		1주				
"		장미		1주				
"		석류나무		1주				
"		금송		1주				
"		기타수목		3주				
"	663-1	담장	블록	9.1m ²	김형숙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296-4		
"		감나무		1주				
"		복숭아		1주				
"		대추나무		1주				
"		음나무		2주				
"		초코베리		18주				
"		개나리		1주				
"		영산홍		1주				
"		기타수목		3주				
"	660-1	대문	슬라브,블록	21.6m ²	이도균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614		
"		가옥	슬라브,블록	125.5m ²				
"		가옥	조립식판넬	43.4m ²				
"		가옥	조립식판넬	17.5m ²				
"		담장	블록	3.2m ²				
"		마당	보도블록	0.4m ²				
"		마당	콘크리트	1.6m ²				
"		단풍나무		1주				
"		기타수목		1주				
"		대문	철재	1식				
"	1442-1	사과나무		8주	이복덕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659-2		
"	954-3	가옥	슬라브,블록	122.2m ²				
"		화장실	슬라브,블록	6.4m ²				
"		방앗간	슬레트,블록	168.4m ²				
"		벽체	스레트	18m ²				
"		문주	블록	0.4m ²				
"		담장	블록	2.1m ²				
"		대문	철재	1식				
"	954-5	가옥	양철,블록	14m ²	한임선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954-3		
"		담장	블록	2.1m ²				
"		문주	블록	0.9m ²				
"		대문	철재	1식				
"	954-1	가옥	스레트,블록	68m ²	유병규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048-2		
"		가옥	슬레트,블록	36.5m ²				
"		가옥	판넬,블록	20.6m ²				
"		가추	양철	8m ²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개정안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2월 15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 :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2. 개정이유

- 약사법 개정 및 감염병관리담당 신설에 따른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인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별표개정
 - 단위업무 수정, 삭제 반영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행정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행정과

- (1) 전 화 : 055-940-3172

(2) F A X : 055-940-3169

(3) E-Mail : misogynl@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17 ~
----------	--------

제출연월일	2017. 2. .
제 출 자	행정과장

1. 개정이유

약사법 개정 및 감염병관리담당 신설에 따른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위업무 수정 반영(안 별표)

- 감염병관리담당 신설에 따른 단위업무 수정

나. 단위업무 삭제 반영(안 별표)

- 약사법 개정에 따라 사무명 삭제
 - “독극약 및 독극물 관계 지도단속” 사무명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그 밖에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없음
- (3) 입법예고: 2017. 2. 15 ~ 3. 7 /20일간
- (4)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없음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규 정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5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행정리 명칭을 지역특성 및 역사적 전통,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거창읍 가지리의 행정리명을 조정함(안 별표 2)
 - 지내 ⇒ 갈지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행정과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팩스[940-3169], 전화[940-3184] 또는 E-mail[bizarrebaby@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안 1부.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	--------

제출일자	2017. .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 이유

행정리 명칭을 지역특성 및 역사적 전통,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거창읍 가지리의 행정리명을 조정함. (안 별표 2)

- 지내 ⇒ 갈지

※ 주민 의견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2. 16. ~ 2017. 3. 7.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

읍 면 명	리 명 칭	정 수	행정리의 명칭		개정이유
			현 행	개 정 안	
거 창 읍	가 지 리	5	개화, 중촌, <u>지내</u> , 교촌, 성산	개화, 중촌, <u>갈지</u> , 교촌, 성산	주민 의견 반영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10.

거창군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비판 여론에 따라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 신설(안 제2조4항)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

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4. 입법예고기간 : 2017. 2. 10. ~ 2017. 2. 16. (6일간)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50132)에게 서면이나 메일(jhkim0829@korea.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의회 의회사무과 **【☎055)940-80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1부.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p> <p>① ~ ③ (생략)</p> <p>④ <신설></p>	<p>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u></p>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2014.6.3.>
 -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제2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거창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 따라 제224회 거
창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 공고함.

1. 집회일시 : 2017년 2월 24일(목요일) 10:00
2. 집회장소 : 거창군의회 본회의장

2017년 2월 15일

거창군의회 의장 김 종 두